

미래도약 경제도시 · 포용사회 문화도시 · 시민중심 자족도시

-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 자격및등급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 평가자	3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분야별 평가자	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평가자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절대평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4) 업무여유도	[17]	절대평가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 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 평가자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절대평가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 이적계수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절대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나)재정상태 건실도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절대평가	
	(가)개발실적	2		
	(나)투자실적	2		
	(다)활용실적	2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5) 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6) 하도급준수	감점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 청년고용	가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II.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분야별 평가자	(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환경영향평가사</th> <th>해당기술사</th> <th>특급평가자</th> <th>고급평가자</th> <th>중급평가자</th> <th>초급평가자</th> </tr> </thead> <tbody> <tr> <td>총괄</td> <td>1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분야별 책임 평가자</td> <td>단순</td> <td>-</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td> </tr> <tr> <td>복잡</td> <td>-</td> <td>100%</td> <td>90%</td> <td>8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분야별 평가자</td> <td>단순</td> <td>-</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r> <tr> <td>복잡</td> <td>-</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body> </table>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평가자	(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7">경력년수</th> </tr> <tr> <th>17년이상</th> <th>15년이상</th> <th>13년이상</th> <th>10년이상</th> <th>9년이상</th> <th>7년이상</th> <th>7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괄</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d>5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d>50%</td> <td>40%</td> </tr> <tr> <td rowspan="2">분야별 책임 평가자</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d>50%</td> </tr> <tr> <td rowspan="2">분야별 평가자</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구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경평가 참여 능력 평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p>○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p> <p>○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p> <p>○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실적건수</th> </tr> <tr> <th>15건이상</th> <th>13건이상</th> <th>11건이상</th> <th>9건이상</th> <th>9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괄</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2">분야 책임평 가자</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2">분야 참여평 가자</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body> </table> <p>※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p>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 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 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 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 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p>○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p> <p>○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Sigma [\text{계약금액} \times (\text{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 / \text{총계약기간}) / 10\text{인}]$ </p> <p>※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p> <p>○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중복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5) 교육훈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본 과업은 전차 사업이 없으므로 일괄 배점(1점) 적용
	(7) 이적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수행실적	[14]																																														
	(가) 환경영향평가등수행건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등수행금액	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5">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유사평가실적건수</td> <td>단순</td> <td>10건이상</td> <td>8건이상</td> <td>6건이상</td> <td>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복잡</td> <td>15건이상</td> <td>12건이상</td> <td>9건이상</td> <td>6건이상</td> <td>6건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3">유사평가실적금액</td> <td>단순</td> <td>250%이상</td> <td>200%이상</td> <td>100%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복잡</td> <td>500%이상</td> <td>400%이상</td> <td>350%이상</td> <td>300%이상</td> <td>300%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p>○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p> <table border="1" data-bbox="513 340 1406 674">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d>대기업/중기업</td> <td>100%</td> <td>80%</td> <td>70%</td> </tr> <tr> <td>소기업</td> <td>100%</td> <td>90%</td> <td>80%</td> </tr> </table> <p>※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p>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 개발실적	(2)	<p>○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p> <p>※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등급별 가중치(A)></p> <table border="1" data-bbox="513 1272 1425 1384"> <tr> <td>구 분</td> <td>신기술</td> <td>특 허</td> <td>실용신안</td> <td>연구보고서*</td> </tr> <tr> <td>계 수</td> <td>1.0</td> <td>0.6</td> <td>0.3</td> <td>0.1</td> </tr> </table> <p>*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p> <p>*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p> <table border="1" data-bbox="513 1639 1425 1823">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td> <td>1.0</td> <td>0.8</td> <td>0.6</td> </tr> <tr> <td>실용신안 / 연구보고서</td> <td>1.0</td> <td>0.8</td> <td>-</td> </tr> </table> <p>※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p>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투자실적	(2)	<p>○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1.5% 이상</td> <td>1.5% 미만 1.2% 이상</td> <td>1.2% 미만 1.0% 이상</td> <td>1.0% 미만 0.75% 이상</td> <td>0.75% 미만 0.5%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p>○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 1.0 \times A \times B \times C)$</p> <p>※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p> <p>(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p> <p>(B) 등급별 계수</p> <p>(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p style="text-align: center;"><활용건수 및 금액(A)></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활용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p>※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등급별계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신기술</td> <td>특 허</td> <td>실용신안</td> </tr> <tr> <td>계 수</td> <td>1.0</td> <td>0.6</td> <td>0.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 / 실용신안</td> <td>1.0</td> <td>0.8</td> <td>0.6</td> </tr> </table> <p>※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 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p> <p>※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p> <p>※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p>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 공동도급	[1]	<p>○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p> <p>1)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p> <p>※ 본사업의 평가에서는 1)항에 대해 참여업체 모두 만점 <0.5점> 부여함</p> <p>2)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p> <p>※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p> <p>※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p> <p>※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p>
	(5) 업체능력평가	[2]	
			<p>○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평가</p> <p>-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제출사 “수”, 미제출시 “가”등급 부여</p>
	(6) 하도급 준수		
			<p>○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p>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별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p>
	(7) 청년고용가점		
		0.1 0.2 0.3	<p>○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p> <p>· 1% 이상 : 0.1점</p> <p>· 2% 이상 : 0.2점</p> <p>· 3% 이상 : 0.3점</p> <p>※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p> <p>※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p> <p>※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p> <p>※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p> <p>-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별표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분	평가대상
유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중 단지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단지조성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평화경제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법에 의한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중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p>※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p>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업 이외의 모든사업

【별표 2】 《총괄평가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표 3】 《총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단,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경우 제출시 “수” 등급을 부여하여 미제출시 “가” 등급 부여

구분	배점	지 표
최우수 (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우수 (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제시
보통 (미)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
미흡 (양)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불량 (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부실한 답변

【별표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비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사사오입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단순사업 적용)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총괄 평가자 포함 5인을 평가한다.

참여평가자 구성 : 5인

- 총괄평가자 (1인)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2인) : 환경 분야
- 분야별 참여평가자(2인) : 환경 분야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 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
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3. 용역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舊 사전환경성검토는 포함하며,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 및 재대행 등은 제외한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 평가서 : 2부(원본1부 포함)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 6부
(별권으로 제출 :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전체 평가자료 저장 USB : 1개

3) 제출장소 : 발주청

다.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유의사항

- 1)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 통보합니다.

- 4)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 6)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 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하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결정에 따라 처리함.
- 7)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미 기재시 “6”항과 같이 처리함).
- 8)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9)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 10)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市の 해석에 따른다.
- 11)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 12)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합니다.
- 13)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과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p>과주시에서 시행하는 과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6.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과주시장 귀하</p>			

-----절 ----- 취 -----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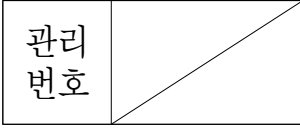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과주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접수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표자	연락처	회사) H.P.)	
주소			

접수일 : 2026

접수자 : 소속 과주시 평화경제과 성명 (인)

표지



14Point 가로5×세로3cm

원본,부분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8Point

2026.

20Point

(주) ○○ ○○ ○○

(주) ○○ ○○ ○○

25Point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사업 수행 참여신청서 (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4. 참여평가자
 -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양식 4)
 - 4.2 총괄표 (양식 5)
 - 4.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 (양식 6)
 -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양식 7)
 -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양식 8)
 - 4.6 과업의 이해도 (양식 9)
 - 4.7 이적계수 (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5.1 업체의 수행실적 (양식11)
 - 5.2 업체의 업무정지 현황 (양식12)
 -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3)
 - 5.4 재정상태건실도 (양식14)
 - 5.5 기술개발 실적 (양식15)
 - 5.6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16)
 -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양식17)
 - 5.8 공동도급 현황 (양식18)
 - 5.9 하도급 준수여부 (양식19)
 - 5.10 청년 고용 여부 (양식20)
6. 자기평가서 (양식21)
7. 각 서
 -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양식22)
 - 7.2 청렴 서약서 (양식23)
 - 7.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24)
- 기술능력 평가서 (별본)
 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양식25)

1. 사업 수행 참여 신청서

[양식 1]

사 업 수 행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파주시장

제 목 :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수행 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수행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역명 :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수요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붙임 : 1.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5.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에 참여코자 불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적격심사 부적격 또는 계약해지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계					100%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예에서 '00.00.00.파주시에서 공고(파주시공고 제○○○○-○○호)한 “용역명 기재”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환경분야기술자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파주시장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작성요령 등〉

- ①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함
-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4]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 주) 1.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2. 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금회 참여평가자 5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4.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공동도급시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 평가자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 A사, 70% B사 30%	대표회사 A사 60%, B사 30%, C사 10%
산출방법	5명	$5명 \times 70\% = 3.5 \approx 3\sim 4명$ $5명 \times 30\% = 1.5 \approx 1\sim 2명$	$5명 \times 60\% = 3.0 \approx 3명$ $5명 \times 30\% = 1.5 \approx 1명$ $5명 \times 10\% = 0.5 \approx 1명$

[양식 5]

4.2 등급, 경력, 실적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책 기 술 자	성 명	연령	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		경력 (연수)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종류	취득일			
총 괄 평 가 자									
환 경 분 야 책 임 평 가 자									
환 경 분 야 참 여 평 가 자									

〈작성요령 등〉

-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 ② 경력난에는 4.3양식에 따른 연수로 기재
-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 ④ 총괄 평가자와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구분 작성 한다.
- 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자의 경력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 환경분야를 차등하여 계산한 환산경력의 합을 기재한다.

[양식 6]

4.3 참여 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 경력(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번	사업명	발주처	평가 구분	참여 기간						
				착수일	준공일	인정일	적용계수	참여 일수	적용 일수	전문분야
			기타	99.01.01.	02.12.31.			365	219	
			환경					730	730	
			기타					365	219	
	계								1,168일 (3.2년)	

- 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 번	사 업 명	사업개요	발주처	참여기간		전문분야	평가 실적계수	사업종류 실적계수	계수적용 건수
				착수일	준공일				
				00.00.00.	00.00.00.		0.6	1	0.6
	계								0.6건

〈작성요령 등〉

- ①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대해서 각각 개인별 별지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해당전문분야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조사등)을 기재)
-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 ⑤ 경력 및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
- ⑥ 경력은 및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하여야 하고,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협회 확인이 누락·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인정일”로 계산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책 기 술 자	성 명	중 복 금 액	점 수	비 고
총 괄 평 가 자				1인당 4.0
○ ○ 분 야	책 임 평 가 자			1인당 3.5
○ ○ 분 야	참 여 평 가 자			1인당 3.0
계			점	

- 업무여유도(EXCEL 양식으로 작성)

(참여분야 : , 000)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5. 00 . 00 .)

NO	용 역 명	발 주 처	총사업금액 (백만원)	사업기간	1년내 잔여일수	총계약기간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1								
2								
3								
	계						000.0	

<작성요령 등>

- ①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신고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단, 2015.12.29(환경부 고시일)이전에 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분야별책임기술자 이상으로 참여한 경우만 평가하고, 2015.12.30.이후 계약된 용역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도 평가. 또한 2015.12.29. 이전에 계약되었더라도 2015.12.30.이후에 변경되어 투입된 경우 업무여유도로 평가)
- ②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및 조직표 상 기재 인원 순 작성
-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 ④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발주처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 ⑤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 사본, 전체 평가 참여자 명단(착수계) 등]
- ⑥ 모든 평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며, 허위·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한다.

[양식 8]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월일 ~ 년월일	훈련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총괄 평가자			 ~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평가자		 ~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1주 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
- ※ 교육훈련의 인정(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음)
 - 1) (사)환경영향평가 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 교육과정
 -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	성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분야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해당사항없음” 명기

※ 본 과업은 전차 사업이 없으므로 일괄 배점(1점) 적용

[양식 10]

4.7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이적계수	비 고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관련 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1]

5.1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참여당시 지분을 적용 수행실적		당해참여 지분율	지분을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계					
배점					

- 업체수행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용역기간		준공금액		참여당시 지분율 (%) ④	당해참여 지분율 (%) ⑤	적용 건수 (①×② ×④× ⑤)	적용 금액 (①×② ×③× ⑤)	비고
					착수일	준공일	전체	지분 금액 ③					
1			1.0	0.6				100	70%	50%	0.21	60	
2			0.6	0.6				200	60%	50%	0.1	72	
3													
계											0.31	132	

<작성요령 등>

-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②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 ③ 한국건설관리협회 확인 또는 발주관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

[양식 12]

5.2 용역업체의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처분명칭	조치 기관명	제재받은 내용			비고
				제재기간	사유	근거	
				월 일			

<작성요령 등>

- ① 용역업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업무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
 -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 ⑤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3]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명 (참여분야)	용역명	처분명칭	조치 기관명	제재받은 내용			비고
				제재기간	사유	근거	
				월 일			

<작성요령 등>

- ① 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관련업무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
 - ④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4]

5.4 재정상태 건설도

○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③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15]

5.5 기술개발 실적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신안 건명	유효기간	적용분야	최 초 출원인	참 여 지분율	환산 건수	비 고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계								

<작성요령 등>

- ①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 ②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 받은 것에 한한다
- ③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 ④ 특허등록 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 ⑤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
- ⑥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 ⑦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양식 16]

5.6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비 고
합 계				
평 균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 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

[양식 17]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기술개발 활용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업체명 :)

구분	건명 (지정·등록번호)	활용현황		활용실적			등급별 계수 ②	경과기간		점수 ①×②× ③
		사업명	활용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가중치 ①		년/월	가중치 ③	
신기술	□□환경 신기술 (123)									
	소 계 ①									
특허	○○특허 (123489)									
	소 계 ②									
실용신안										
	소 계 ③									
합 계 ①+②+③										

- ※ 환경분야 작성
-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1건으로 인정
- ※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신기술 활용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 만 인정
- ※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 시공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 공동수행 시 총괄표 작성
- ※ 허위(오류 등)로 기재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함

[양식 18]

5.8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본사업의 평가에서는 참여업체 모두 만점 <0.5점> 부여함)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업체구분에 대한 증빙자료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19]

5.9 하도급 준수여부(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별 점	적 용	비 고
대표사					
공동사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감점 적용

※ 단, 별점의 감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사항(문서)만 인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 3) 시정권 고: 1.0점
-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 5) 시정명령 : 2.0점
- 6) 과징금 : 2.5점
- 7) 고발 : 3.0점

[양식 20]

5.10 청년 고용 여부(최근 3년간)

청년 고용(가점)

구분	업체명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 (최근 3년)	신규 고용율 (%)
대표사				

<작성요령 등>

- ①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②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③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④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6. 자기평가서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4)업무여유도	총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5)교육훈련		2.0		
(6)과업이해도		1.0			
(7)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2.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수행실적	(가)건 수	7.0		
		(나)금 액	7.0		
	(2)신용도	(가)부실업체 등	6.0		
		(나)재정상태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0		
		(나)투자실적	2.0		
		(다)활용실적	2.0		
	(4)공동도급	2중업체(분담)	0.5		
		소기업(공동)	0.5		
(5)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2.0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7. 각 서

[양식 22]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사는 귀사에서 발주한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사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사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전화 :

파주시장 귀하

7.2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대표사)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서약자(공동이행)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파주시장 귀하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양식 24]

7.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파주시장 귀하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본 제출)

[양식 25]

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체 능력 평가)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과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구 분	
--------	--

2026. .

업체명 (1부 기재, 나머지 표시 금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기 표지를 복사하여 원본크기로 작성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용역 수행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용역 수행 시 및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항만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